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94
----------	------

발의연월일 : 2025. 3. 24.

발의자 : 윤준병 · 신영대 · 박민규
문대림 · 박홍배 · 조계원
정동영 · 김한규 · 민병덕
박지원 · 김태년 · 김태선
허종식 · 송옥주 · 서영교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중소기업의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
- 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의4).
-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 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3조의2).
- 마. 내국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바.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4조).
- 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
- 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의3).
- 자. 투융자집합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로 연장함(안 제27조).

차.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0조).

카. 수도권과 밀접 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데 따르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1조).

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파.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4조).

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7조의3).

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5조의8).

너.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
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u>2030년</u>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u>2030년</u>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u>2030년</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u>2030년</u>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u>2030년</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u>2025년</u>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u>2030년</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략)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u>2025년</u>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u>2030년</u>

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 6. (현행과 같음)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u>2025년</u>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u>2030년</u>
(2) ~ (4) (생 략)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	(2) ~ (4) (현행과 같음)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u>2030년</u>

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율준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

1. ~ 3. (생략)

② (생 략)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
행과 같음)

② _____

30년 -----

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2030년

2030년

2030년

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
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
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 2030년 -----

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 ----- ----- ----- ----- ----- ----- ----- ----- ----- ----- -----.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